

수원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0가단281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희

변 론 종 결 2021. 4. 21.

판 결 선 고 2021. 7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 중 3/20 지분에 관하여
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9. 6. 21. 접수 제222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의 소유자인 C은 1964. 1. 28.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로 E, 원고, F가 차례대로 태어났다.
 - C은 2002. 7. 2.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/5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, 2003. 4.경 D과 이혼하였다.
 - C은 2006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/5 지분을 F에게, 1/5 지분을 E에게 각각 유증하였고, 2008. 4. 24. 사망하였다.
 - F는 2008. 5. 30. 이 사건 각 부동산의 C 지분(3/5) 중 2/5에 관하여 ‘2008. 4. 24. 유증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 - 원고는 2008. 7.경 F와 E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(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243호)를 제기하였고, 2009. 12. 18. ‘원고에게,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10 지분(F의 2/5 지분 중 1/4)에 관하여,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20 지분(E의 1/5 지분 중 1/4)에 관하여 각 2009. 12. 18.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’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(이하 ‘이 사건 조정’이라고 한다)이 성립되었다.
 - F는 2010. 4. 28.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‘2009. 12. 18. 유류분반환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명의로 남아 있던 1/5 지분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, 3/20 지분에 관하여 E이 각각 ‘2008. 4. 24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 - E, 원고, F는 2010. 1. 1.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서 ‘G’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지분비율(원고, E 각 25%, F 50%)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 무렵부터 위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.
 - E은 2019. 6. 21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/20 지분을 9,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/20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 2, 4, 5, 6, 14, 23호증, 을1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E의 이 사건 토지 중 3/20 지분 가운데 1/20 지분에 관하여 2009. 12. 18.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그런데도 E은 2019. 6. 21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/2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위와 같이 E이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의 3/20 지분 중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1/20 지분에 대하여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,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/20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가 무효이다.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기도 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/20 지분에 관하여 마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○ 살피건대,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E은 이 사건 조정의 결과에 따라 2010. 4. 28. 원고로 하여금 C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의 1/5 지분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고, 나머지 3/20 지분에 관하여는 E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E이 2010. 4. 28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3/20 지분 중 1/20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E은 2009. 12. 18.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/20 지분(E의 1/5 지분 중 1/4)에 관하여 2009. 12. 18.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. 그 후 2010. 4. 28. 이 사건 토지 중 C 명의로 남아 있던 1/5 지분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, 3/20 지분에 관하여 E이 각각 ‘2008. 4. 24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리고 F는 위 2010. 4. 28.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‘2009. 12. 18. 유류분반환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로 보아, 원고가 2010. 4. 28. 이 사건 토지 중 C 명의의 1/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, 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10. 4. 28. 이 사건 토지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‘유류분반환’이 아니라 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이므로, 그 당시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유류분반환의무를 이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

그러나 F가 2010. 4. 28.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‘유류분반환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처럼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‘유류분반환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던 것은, 그 당시까지 E이 이 사건 토지 중 C 명의의 남아 있던 1/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, 이에 위 1/5 지분의 소유 명의인도 아닌 E이 원고에게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. 그 당시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자 하였다면, 일단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/5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을 취했어야 하는데, 이는 절차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효율적인 방식이었기에 원고와 E이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

원고는 2010. 4. 28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 중 1/20 지분은 이 사건 조정과 별도로 원고가 E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.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8항에서는 ‘당사자들은 향후 망 C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,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유류분반환 등 어떠한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’라고 정하고 있는바,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고 상속지분을 확정하고자 하였던 E이 그 후 별도로 원고와 상속재산에 관한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. 게다가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E이 2010. 4. 28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 중 3/20 지분 가운데 1/20 지분에 관하여는 다시 원고에게 ‘유류분반환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, 원고가 그 무렵 바로 E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. 그런데도 원고는 위 2010. 4. 28.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의 3/20 지분에 관하여
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E에게 위와 같은 이의 및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 이는 원고 스스로도 이미 2010. 4. 28. 이 사건 조정예 따라 E이 C으로부터 유증받았던 이 사건 토지의 1/5 지분 중 1/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.

○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조정예 따라 E이 2010. 4. 28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3/20 지분 중 1/20 지분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,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,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(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)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9. 6. 21.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/2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곽용현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1. 경기 포천군 I 대 362㎡
2. 경기 포천군 J 대 99㎡
3. 경기 포천군 K 대 127㎡
4. 경기 포천군 L 대 761㎡
5. 경기 포천군 I, L 지상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

1층 267.84㎡

2층 282.66㎡

3층 282.66㎡

4층 282.66㎡

지하 267.84㎡(내역: 지하, 1층, 2층, 3층 - 근린생활시설, 4층 - 주택). 끝.

